#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06

발의연월일: 2020. 12. 14.

발 의 자:신정훈·김경만·진성준

김승원 • 박성준 • 황운하

위성곤 • 전용기 • 민홍철

서영교 · 김상희 · 민형배

박영순 · 이원택 · 주철현

임호선 · 이성만 · 윤재갑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세금·공공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 을 지원할 수 있고,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이 주 생계수단 인 경우에 해당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되어 있고, 영업 관련 시설이나 건물 등의 피해 복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에 대한 근거는 없음.

이에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소상공인의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

화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제7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 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지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시설 복구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제7호의2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② (생 략) 조 등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 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 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 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다.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 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 9. (생략)

④ ~ ⑦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